

제28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1. 6. 15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·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6월 15일  
전문위원 최 광 호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65
- 나. 발 의 자: 정정희 의원 외 8명
- 다. 발의일자: 2021년 5월 2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
## 2. 제정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강서문화원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강서구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사업보조금,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규정함  
(안 제4조 ~ 제6조)
- 마. 재산의 출연 및 반납, 출연금의 운용 및 관리, 국·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 ~ 제9조)

바. 회계 관리에 대한 규정 및 사무의 검사·감독에 대하여 규정함  
(안 제10조 ~ 제11조)

사. 시행규칙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함(안 제13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, 제19조

나. 협조부서: 문화체육과

다. 입법예고(2021.5.27.~2021.6.1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정 취지

-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건전하게 지방문화원을 육성·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 내용

-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  - 위임 법률 근거와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
  - “강서구 문화원” 이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, 구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함.

[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]

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

-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.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” 는 명확한 내용의 규정을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의”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적용범위 규정(안 제3조)

-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이 조례를 따름

○ 보조금의 지원 근거 명시(안 제4조)

- 사업보조금,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
- 구청장은 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수정이 필요함.

○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용도 규정(안 제5조 ~ 안 제6조)

- 문화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가능
  - 지역문화 사업 수행 시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며, 문화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운영보조금으로 지원
- (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8조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5조1)

1) 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○ 재산의 출연과 출연금등의 운용·관리(안 제7조 ~ 안 제8조)

- 구청장은 문화원 지원·육성에 필요한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, 출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·관리함

○ 국·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근거 마련(안 제9조)

- 필요한 경우 국·공유재산 무상 대여가능(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5조)

○ 회계관리 등 규정(안 제10조)

-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함(책임자 지정 및 수입 지출 장부기록, 변상 등)

○ 사무의 검사 및 감독 규정(안 제11조)

-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, 공무원에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사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설립이 이전에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나, 2021년 1월 1일부로 「지방일괄이양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<sup>2)</sup>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,

2) 위임사항

[ 지방문화원진흥법(2018.11.17.시행 )

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
제6조(시설)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

[ 지방문화원진흥법(2021.1.1.시행 )

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조례로 정한다.  
제6조(시설)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서울시 지방문화원은 자치구별로 1개의 원(院)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‘서울시문화원연합회’를 포함하여 총 26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.(붙임 참조)

- 강서문화원은 1995년 5월 23일 설립되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 및 강좌 등을 시행하며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과의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태임.
  
- 이번 조례제정은 지방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과 연계된 각종 문화사업의 다각화로 지역문화를 건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업 수행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 등에 대한 지속관리 관리·감독도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 붙임

## 자치구 지방문화원 현황

문화원명	원장	설립일	시설현황 (연면적)	주소	전화번호	비고
서울시 문화원 연합회	박삼규	'96.09.20	196.13㎡	종로구 난계로 255 (대경빌딩 1006호)	2233-9084	
종로	최창혁	'94.12.22	247㎡	종로구 율곡로 5(단독원사)	2148-4087	
중구	김경수 (직무대행)	'95. 8.17	383㎡	중구 청계천로 86(한화빌딩 1층)	775-3001	
용산	박삼규	'97.12.12	1,286㎡	용산구 원효로 효창원로 8길 28	703-0052	
성동	김종태	'97.10.21	127㎡ <b>(608.25㎡)</b>	성동구 왕십리로281(성동문화회관 2층)	2286-6234	( )안은 입대사용
광진	양희종	'96.11.11	2280.82㎡	광진구 광나루로 56길 67	447-0244	
동대문	윤종일	'98.12.28	561㎡	동대문구 왕산로 128 (동의보감타워 지하2층)	2241-9300	
중랑	김태웅	'98. 9.26	570.76㎡	중랑구 면목로 238, 중랑구민회관 3층	492-0066	
성북	조태권	'96.12.30	450.75㎡	성북구 성북로 4길 13-8(단독원사)	765-1611	
강북	임경자	'96.12.12	347.57㎡	강북구 삼각산로 85(수유동) 강북문화예술회관 본관 3층	999-8109	
도봉	이영철	'94. 8.20	753㎡	도봉구 도봉로 552 (도봉구민회관 3층)	905-4026	
노원	박춘택	'97.12. 9	1,686㎡	노원구 동일로 197길 24(단독원사)	6380-0022	
은평	김명자	'98.11. 5	131.70㎡	은평구 녹번로 16(문화예술회관 2층)	383-9300	
서대문	신현준	'01.10.26	342㎡	서대문구 백련사길 39 (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)	3217-1592	
마포	최병길	'97. 9.30	1,236㎡	마포구 백범로 227(단독원사)	312-1100	
양천	이지태	'97. 2.28	2,109.05㎡	양천구 목동서로 367 (양천문화회관 별관5층)	2651-5300	
강서	김진호	'95. 5.23	2,046.45㎡	강서구 화곡로 215(단독원사)	2607-4233	
구로	최문식	'05. 3. 10	1062.73㎡	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(오류문화센터 2층,5층)	851-0837	
금천	손정기	'99. 6.22	2,025.2㎡	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1	896-8553	
영등포	한천희	'99. 8. 7	3,804㎡	영등포구 신길로 275(단독원사)	846-0155	
동작	송지현	'98.12.21	1,145㎡	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(동작문화복지센터 3층)	822-8500	
관악	진진형	'92. 2.28	200㎡	관악구 신림로 3길 35 (관악아트홀 1층)	885-5975	
서초	박기현	'09. 3.17	429㎡	서초구 강남대로 201 (서초문화예술회관 2층)	2155-8609	
강남	박양재	'98. 4.14	563.89㎡	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(역삼푸른솔도서관 3층)	3454-1517	
송파	정병구	'94. 9. 7	2,235㎡	송파구 올림픽로 44(단독원사)	414-0354	
강동	양재곤	'99. 1.29	212.69㎡	강동구 상암로 168 (강동구민회관 2층)	3425-6994	

**□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**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21., 2020. 6. 9.>

1. 삭제 <2020. 6. 9.>

2. 삭제 <2020. 6. 9.>

3. 삭제 <2020. 6. 9.>

4. 삭제 <2020. 6. 9.>

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 
<개정 2011. 7. 21.>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[제목개정 2020. 6. 9.]

**□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19조**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